운영규정의 개요

Ⅰ. 기본정보(2026.01.01. 기준)

<table>
<tr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2">효재가방문센터</td><td>장기요양기관번호</td><td colspan="2">2-42760-00072</td></tr>
<tr><td>대표자</td><td colspan="2">황 애 란</td><td>센터장</td><td colspan="2">이 재 화</td></tr>
<tr><td>신고/지정일자</td><td colspan="2">2020년 11월 23일
2020년 12월 28일</td><td>지정형태</td><td colspan="2">방문요양 ,방문목욕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력현황</td><td>대표자 겸 사회복지사</td><td>센터장</td><td>사회복지사</td><td colspan="2">요양보호사</td></tr>
<tr><td>1</td><td>1</td><td>2</td><td colspan="2">43</td></tr>
<tr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033-336-5888</td><td>팩스</td><td colspan="2">033-332-5888</td></tr>
<tr><td>이메일</td><td colspan="2">hwang202012@gmail.com</td><td>홈페이지</td><td colspan="2">http://blog.naver.com/hyo_dailycare</td></tr>
<tr><td>사업장 주소</td><td colspan="5">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2길 7-7</td></tr>
<tr><td>주차 시설</td><td colspan="5">효재가방문센터 사무실 근처 공용주차장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효재가방문센터
사무실
근로시간</td><td colspan="2">평일</td><td colspan="3">08:30~18:0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말 및 공휴일</td><td colspan="3">휴 무 (센터장이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음.)</td></tr>
</table>

Ⅱ.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.

2. 이용자 모집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기관홈페이지, 블로그, 유선상담, 방문상담, 지역사회 내 연계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Ⅲ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●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계약기간	● 효재가방문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해지	●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●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●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●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●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울 때
신원인수인 권리	●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●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●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 ●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신원인수인 의무	●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●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●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배상책임보험	● 효재가방문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*본 운영규정은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.	

서비스 제공 내용	● [방문요양, 방문목욕]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,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. 가.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. 1) ① 신체활동지원: 세면도움, 구강청결도움, 식사도움, 몸단장, 옷 갈아 입기 도움, 머리 감기도움, 몸 씻기 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2) ② 인지활동지원: 인지자극 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 3) ③ 인지관리지원: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4) ④ 정서지원: 의사소통 도움, 말벗, 격려 등 5)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: 개인활동지원, 식사준비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 나. 2.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1) ② 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2)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	●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1.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. 다. 2. 월 이용료는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 라. 3.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,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,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. 4.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(비급여)은 대상자(보호자)가 전부 부담한다. 1)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) ② 대상자(보호자)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)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
*본 운영규정은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.	